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67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안호영 · 박희승 · 안도걸
김우영 · 이성윤 · 이원택
김주영 · 전진숙 · 장철민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 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 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석재·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골재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하
다): 12만톤 이상

나.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이상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
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
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석
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
용하려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재활용환경

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 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 (생 략) ② ~ ⑦ (생 략)	----- ----- ----- ----- <u>가.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이상</u> <u>나.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 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 2만톤 이상</u> <u>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 퍼센트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 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 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 질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 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 는 경우</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